

2017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자!

2017년도 ○○○○○○○원 종합감사 결과보고

---

2017. 7.



# 목 차

<b>I. 감사실시 개요</b> .....	<b>1</b>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2
<b>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b> .....	<b>3</b>
1. 조직 및 인력.....	3
2. 2017년 연구과제 현황.....	3
3. 2016년 연구과제 실적.....	4
<b>III. 감사결과</b> .....	<b>5</b>
1. 총 평.....	5
2. 지적사항 총괄.....	6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6
<b>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b> .....	<b>10</b>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제도개선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0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2
<b>V. 기타사항</b> .....	<b>12</b>
1. 향후 처리계획.....	12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12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12

# I .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연구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자산관리, 직원복무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시정, 개선, 지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연구원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원의 주요 정책 및 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적법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연구논문의 표절검사,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용역 업무의 회계처리 적법성 등 업무 분야별 고위험 리스크 관리,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7. 6. 26. 부터 같은 해 6. 30.까지 5일간 5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2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회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원 종합감사를 통하여 업무전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점, 취약점을 파악하여 미래위험에 대비하고자 함.

### ○○원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	
------	--

구분	강점	약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일 공간정보 연구 전문기관</li> <li>▪ 연구성과 활용 가능한 전국적 실행 조직과 인력</li> <li>▪ 다년간의 지적 및 공간정보 전문적 연구성과 보유</li> <li>▪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 기관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 R&amp;D 수입창출 기반 부족</li> <li>▪ 전문 연구 인프라 부족(인력, 역량, 교류)</li> <li>▪ 기업부설연구소 Vs 독립채산제 운영 상충</li> <li>▪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체계 미비</li> <li>▪ 시급성·적시성 있는 연구에 소극적 대응</li> </ul>

기회	공간정보분야 영역확대로 R&D 사업 수요 증대
위험	공간정보 산업 시장 침체 및 민간부문의 기술력 급속한 발전

### ○○원 정책방향

연구  
방향

정부정책과 LX 중기 전략목표를 반영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추진

국가정책 방향제시 지원연구

LX 국토정보 핵심기술 연구 및 실용화연구

연구  
전략

공간정보 정책 선도

공간정보 실용화 확산

공간정보 기술 고도화

- 📍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 방향 정립 지원 연구**
  -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 **LX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연구**
  - 공사 경영목표 수립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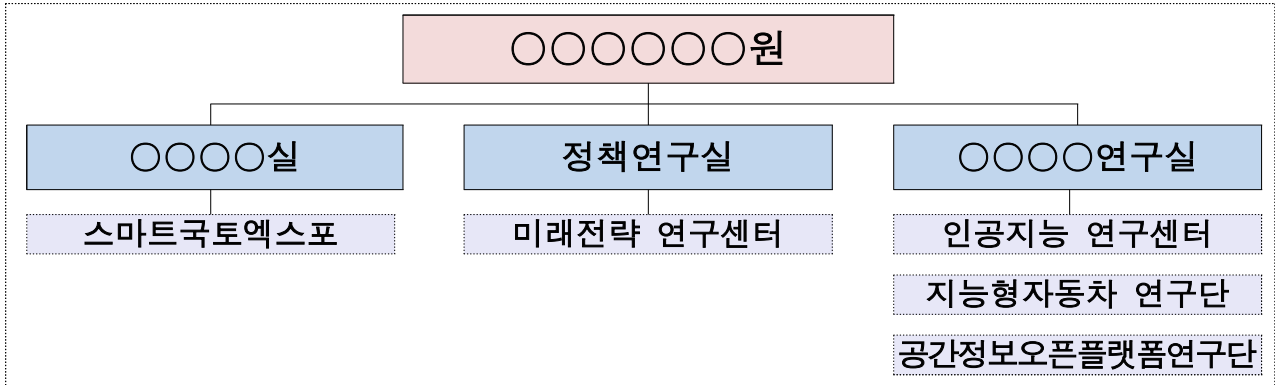
- 📍 **공적역할이 높은 국책사업 발굴 연구**
  - 공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용화
- 📍 **국민생활 밀착형 연구**
  - 국민의 관심이 높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영역 개발

-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핵심기술 연구**
  - 위치정보기술, 공간정보취득 생산기술분야에 핵심기술 선점
- 📍 **공간정보 산업진흥을 위한 융복합기술 연구**
  - 국가 공간정보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산업성장 환경 조성

##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 1. 조직 및 인력

○ 조직: 3실(○○○○실, 정책연구실, ○○○○연구실)



### ○ 인력

(2017. 6. 28. 현재)

구분	정원(명)	현원(명)	비고
원장	1	1	○ 일반직: 16명(보조인력 4명 포함) ○ 연구직: 33명 * 박사 22명, 석사 10명, 학사 1명
○○○○실	13	12	
정책연구실	21	14	
○○○○연구실	22	22	
계	57	49	△8명 (본사겸무 7명, 홍보직 1명 채용 공고중)

### 2. 2017년 연구과제 현황

구분	건수	연구과제명
수탁과제	13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연구 (Ⅲ, Ⅳ) 외 12건
경영과제	9	LX지사의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외 8건
제안과제	11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외 10건
정책과제	4	지적사무의 수행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외 3건
계	37	

### 3. 2016년 연구과제 실적

#### ○ 연구실적

(2016. 12. 31. 기준)

구분	계	수탁과제	경영과제	제안과제	정책과제
과제수	36 건	17 건	11 건	5 건	3 건

#### ○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활용내용	성과(효과)
지적재조사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구 사전예고제, 필지정형화 및 지목변경 절차 간소화, 기금신설 방안</li> <li>지적도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정확도 향상 기술 개발(종전 0.5m ⇒ 개선 0.1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예고제를 통한 기간단축, 다필지 우선 시행 등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사업 추진 가능 (2단계 사업비 3,673억원)</li> </ul>
바로처리콜센터 측량접수 확대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로처리콜센터에서 이동측량을 수반하는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표준 매뉴얼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청 65개 접수창구 인력을 현장에 배치토록 함으로써 연 27억원의 인건비 절감</li> </ul>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도로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대장 전산화 절차 등 도로관리 프로세스 개선</li> <li>드론을 활용한 도로대장 중·횡단 정보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관리시스템 위탁관리기관 지정, 도로대장전산화 사업 수주(8억원), 도로대장 작성 방식 개선 (국가 예산 260억원 절감 효과)</li> </ul>
빅데이터 활용 LX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빅데이터 수요분석을 통한 사업 모델 개발</li> <li>사업모델에 대한 실행전략 및 로드맵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빅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3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458억원의 사업 수익 창출 기대</li> </ul>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포털 구축(안) 제시, 지점번호 설치 8단계 → 7단계, 소요일수 약40일 → 약 25일로 단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점번호 설치 방법 간소화로 비용 절감 연간 12.5억원의 편익 발생</li> </ul>

### Ⅲ. 감사결과

---

#### 1. 총 평

○○원은 「공간정보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HUB 연구기관」의 비전과 「공간정보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이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R&D역량 강화”, “공간정보 인프라 조성 선도”, “맞춤형 연구성과 확산”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지적제도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미래 공간정보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문별 주요 연구개발 성과로는 ‘바로처리콜센터 측량접수 확대방안 연구’로 연간 27억 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도로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 공사가 도로관리시스템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도로대장전산화 사업으로 약 8억 원을 수주하였고 도로대장 작성방식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 약 26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3개 LX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458억 원의 사업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점번호 설치방법 간소화로 연간 12.5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공간정보 정책 개발 및 지원 역할 수행 등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금번 ○○원의 종합감사 실시 결과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연구관련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가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특히 직원 외부강의 신고 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미흡 및 직원 개인별 복무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지급	징계	주의 요구		
건수	35	4		4			3			24		4
금액	581,270						581,270					

※ 지적사항은 11건이지만, 신분조치(주의요구 24)가 동시에 처분되어 합계가 35건임.

※ 현지지도사항 없음.

##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 가. 연구 분야

#### 11- 1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요약 >

「연구개발규정」제32조,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제45조

- 연구결과 현업적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규정 개선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결과(경영 및 제안과제) 36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현업에 적용되었으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현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공간정보 사업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현업 적용(실용화)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업부서의 연구실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사의 중장기연구개발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

#### 11- 2 학술지 저작권에 관한 사항

##### < 요약 >

「학술지발간규칙」제13조

- 「지적과 ○○○○」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 이양동의서 징구 방안 마련
  - 현재 규정에는 편집저작권만 갖도록 되어 있어 2차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결과가 초래됨.
  - 「지적과 ○○○○」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공사에 귀속하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징구 할 수 있도록 「학술지발간규칙」 개정(안)을 마련



### 11- 3 연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요약 >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 “연구심의회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검토하는 절차 마련
  -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연구결과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

### 11- 4 연구개발 규정과 시행규칙의 내용중복 및 불일치 등에 관한 사항

#### < 요약 >

「연구개발규정」,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연구직관리규칙」

- 「연구개발규정」, 「연구개발 시행규칙」, 「연구직관리규칙」의 내용중복과 불일치 되어있는 규정내용을 개선
  -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이 규정에서(삭제) 정의 되어 있음에도 규칙에 중복되어 있음.
  - 연구활동작성, 연구관련 활동결과 작성, 연구성과의 보완, 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의 내용이 중복.
  - 연구과제의 추진사항 등의 진도보고와 연구진행보고 내용이 상호 불일치
  - 폐지된 마일리지 제도가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에 운영하고 있음.
  - 「연구개발 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상호간 내용 중복 및 불일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

### 11- 5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동시수행 한도와 관련된 사항

#### < 요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 동시수행가능 수탁과제 한도 초과
  - 동시수행 가능한 수탁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탁과제를 연구함.
  - 연구품질향상을 위하여 동시수행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한도개수와 관련된 조항을 「연구개발규정」 또는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등에 마련

## 나. 일반행정 및 복무 분야

### 11- 6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 < 요약 >

「한국○○○○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

- 외부강의 신고 미등록
  - 외부강의(국토교통인재개발원\_지적재조사 강의)를 실시하며 ERP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신고를 누락함.

### 11- 7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 < 요약 >

「예산집행지침」

-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 항공편을 이용한 공무여행 후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를 14일 이내에 ERP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등록하지 않음.

## 다. 회계사무 분야

### 11- 8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보수(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 < 요약 >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알림(○○○○○-5924: 2014. 8. 4.), 「연차 휴가에 관한 지침」

- ‘가족 사랑의 날’ 2회 중복 실시
  - 개인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개인별 2회에 걸쳐 중복 실시함.
  - 개인별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차 사용일수 1일에 해당하는 186,270원을 과다 지급함

## 11- 9 부양가족 상실신고 미준수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 요약 >

「급여규정」제6조

-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사항(부 사망)이 발생
  - 「급여규정」 제6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와 지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
  - 부양가족 상실신고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족수당 230,000원을 과다 지급 받음.

## 11-10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납부 부적정

### < 요약 >

「지방세법」제75조, 제78조

- 우리 공사는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기관
  - 법인 표준세율 구분이 “그 밖의 법인(구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어 주민세 50,000원과 지방교육세 5,000원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구원에서는 주민세(균등분) 부과내역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고지금액을 납부하여 2016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165,000원을 과다 납부하였음.

## 11-11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 등록 부적정

### < 요약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5조

- 주점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업종 미등록
  - 법인카드 발급 시 각테일바, 주점, 레저업종등에 대하여 사용제한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발생함.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제도개선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1-1	○○○○실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선			20일	○○○
11-2	○○○○실	학술지 저작권에 관한 사항	개선			20일	○○○
11-3	○○○○실	연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통보			2개월	○○○
11-4	○○○○실	연구개발규정과 시행규칙의 내용중복 및 불일치 등에 관한 사항	개선			1개월	○○○
11-5	○○○○실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동시수행 한도와 관련된 사항	개선			2개월	○○○
11-6	○○○○연구실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통보		주의 요구(1)	1개월	○○○
11-7	○○○○실 외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관리 소홀	통보		주의 요구(21)	1개월	○○○
11-8	○○○○연구실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보수(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 186,270	주의 요구(1)	1개월	○○○
11-9	○○○○연구실	부양가족 상실신고 미준수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 230,000	주의 요구(1)	1개월	○○○
11-10	○○○○실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납부 부적정		회수 165,000		1개월	○○○
11-11	○○○○실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록 부적정	통보			2개월	○○○
계		11건		581,270			

※ 처분요구: 11건<시정 3건, 개선 4건, 통보 4건>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주의요구	○○○○ 연구실	연구직 3급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외부강의 미신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실	○○○○직 5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연구직 3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책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연구위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책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책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 연구실	책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본 부 지적사업처	○○○○직 5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본 부 ○○지사	○○○○직 4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본 부 ○○지사	○○○○직 2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본사 ○○○○부	선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본사 ○○○○부	○○○○직 7급(을)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본사 ○○○○부	책임연구원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관리 소홀	주의요구	본사 ○○○○부	○○○○직 5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예산집행지침 미준수)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 연구실	책임연구원	○○○	가족 사랑의 날 중복 사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 연구실	선임연구원	○○○	가족수당 과다 수령(부양가족상실 미신고)

## 1-2. 제도개선 처분요구 명세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감사자
11-1	○○○○실 (본사 ○○○○실)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사업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현업 적용(실용화)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현업부서의 연구실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사의 중장기연구개발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	○○○
11-2	○○○○실 (본사 ○○○○실)	학술지 저작권에 관한 사항	「지적과 ○○○○」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공사에 귀속하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징구 할 수 있도록 「학술지발간규칙」 개정(안)을 마련	○○○
11-4	○○○○실 (본사 ○○○○실)	연구개발규정과 시행규칙의 내용중복 및 불일치 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상호간 내용 중복 및 불일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	○○○
11-5	○○○○실 (본사 ○○○○실)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동시수행 한도와 관련된 사항	연구품질향상을 위하여 동시수행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한도개수와 관련된 조항을 「연구개발규정」 또는 「연구개발 규정 시행규칙」 등에 마련	○○○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건,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해당사항 없음			

## V. 기타사항

### 1. 향후 처리계획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청렴교육



감사결과 마감회의 및 반부패·청렴교육

###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 방문 기관
  - 6. 28.(수): ○○○○○○원
- 참석자 : 상임감사, 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연구실장, 및 직원 등 28명
- 교육내용
  -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유지 당부
  -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 공사 반부패 청렴정책 설명(부패공익신고센터, 감사핫라인 등)

붙임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부. 끝.

일련번호	11 - 1	감사자	○○○○직 4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2개월

## 한국○○○○공사 상임감사

### 개선요구

제 목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지적제도 및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규정」 제32조(연구성과의 활용촉진 등) 제1항에 따르면 “연구원장은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연구성과가 현업부서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실용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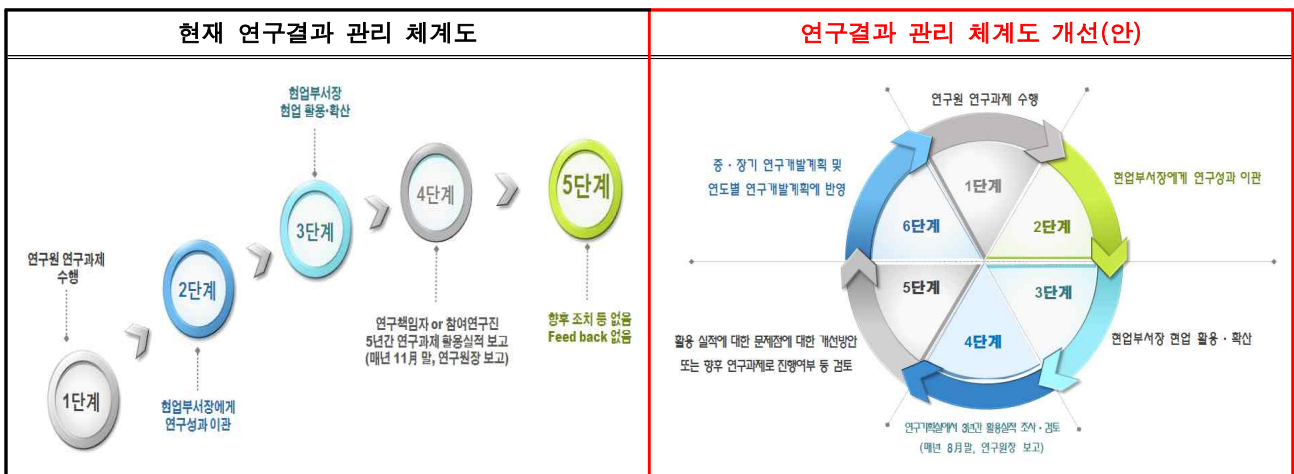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 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매년 5년간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활용부서의 실제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용 결과를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별첨] 연구결과 현업 적용 현황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현업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무 활용, 정부



정책 반영 및 신규사업 개발 등에 적용된 경영·제안과제는 36개 과제 중 22.2%인 8개 과제가 현업에 적용되었으나, 77.8%인 28개 과제가 현업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속가능한 공간정보 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가 현업에 적용되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현재 연구결과 관리 체계도 및 개선(안)



또한 [표] 현황 현재 연구결과 관리 체계도와 같이 연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분석하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결과 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연구성과활용실적”을 활용부서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 받아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하고 있어 현업부서의 객관적인 의견 반영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활용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이나 연도별연구개발계획에 피드백되어 연구과제 성과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나 장기적인 방안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 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가 활용부서의 피드백 및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사의 신규사업 발굴, 정책결정과 기술활용에 적용되어 현업 부서에서 실용화되는 등 공사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현업부서의 연구실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사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표] 현황 연구결과 관리 체계도 개선(안)과 같이 ○○○○부서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가 정부정책 및 공사 경영전략 등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활용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관리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공간정보 사업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현업 적용(실용화)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현업부서의 연구 실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사의 중장기연구개발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구결과 현업 적용 현황

2015년도[경영과제, 제안과제]

(금액단위: 천 원)

연구과제명	담당자 (PM)	연구기간	예산액	적용여부 (○,×)	현업적용 내용
급변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구축 실험사업 연구(Ⅰ)	○○○	15. 4. 1. ~10. 30.	61,360	×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	14. 10. 29. ~15. 3. 31.	98,000	○	○○○○기본도 제작에 활용 (2016. 2. 서비스 제공) ○○○○○○○실
○○○○ 통합조사 방안 연구 -경기도 의왕시에 대한 5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15. 3. 1. ~9. 30.	9,660	×	
지하공간정보 통합 관리방안 연구 -지하도상가 관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15. 3. 1. ~8. 31.	1,048	×	
비콘을 활용한 시설물관리 시스템 개발 -비콘 기준점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	15. 3. 1. ~12. 31.	33,140	×	
공간정보 UFO 엔진개발	○○○	15. 3. 1. ~12. 31.	33,168	×	
세계측지계 지원 플랫폼 개발(Ⅱ) -지적분야 세계측지계 변환을 중심으로 -	○○○	15. 3. 1. ~12. 31.	36,940	×	
LX 위성측위 인프라 실용화 방안 연구(Ⅱ)	○○○	15. 3. 1. ~12. 31.	184,836	×	
토지정보와 건물정보의 통합관리 방안	○○○	15. 7. 1. ~12. 31.	40,1400	×	
HMS 위탁운영 전략 마련 연구	○○○	15. 6. 4. ~10. 1.	40,000	○	(정부정책 반영) 도로대장 작성 방식개선에 활용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HMS 위탁기관 조직체계 개편에 활용 (공사현장 적용) ○○○○ 교육원 교육과정 신설
지적기준점 관리 품셈연구	○○○	15. 5. 1. ~8. 31.	36,000	○	(정부정책 반영) 지적기준점 품셈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제2015-1091호 (2016. 1. 1.) (공사현장 적용) 지적기준점 관리 작업규정
공간정보 표준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	15. 3. 1. ~10. 31.	105,800	○	○○○○부 신설 및 품질 관리본부 조직 구성에 활용
지적도 세계측지계변환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연구	○○○	15. 7. 1. ~11. 30.	6,160	×	
LX 경영평가 계량지표 개발	○○○	15. 4. 1. ~9. 30.	41,800	○	정부 경영평가 지표 적용 (A등급 획득) ○○○○○○○처
빅데이터를 활용한 LX비즈니스 모델연구	○○○	15. 3. 17. ~8. 16	68,310	×	
LX 경영수익성 분석	○○○	15. 3. 1. ~8. 31.	34,040	×	
공공데이터개방 요구에 따른 LX 대응전략 -LX공공데이터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	15. 5. 1. ~10. 30.	53,080	×	

2016년도[경영과제, 제안과제]

(금액단위: 천 원)

연구과제명	담당자 (PM)	연구기간	예산액	적용여부 (○,×)	현업적용 내용
LBS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16. 2. 1. ~9. 30.	26,200	×	
국제표준 기반의 지적측량데이터 표준 작성 연구	○○○	16. 3. 1. ~11. 30.	19,500	×	
LX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정책지도 작성 프로세스 연구	○○○	16. 3. 1. ~11. 30.	12,400	×	
LX_GNSS 위성기준망 실용화 연구	○○○	16. 1. 1. ~12. 31.	152,700	×	
○○○○기본도의 통계적 활용 방안 연구	○○○	16. 2. 1. ~11. 30.	9,250	×	
바로처리콜센터 측량접수 확대 방안 연구	○○○	16. 2. 1. ~10. 31.	16,960	○	이동측량 전화접수 매뉴얼을 고객지원처(바로처리콜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에 활용
국가지점번호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	○○○	16. 2. 1. ~10. 31.	1,530	×	
LX 기본 공간정보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	○○○	16. 2. 1. ~9. 30.	1,530	○	(정부정책 반영) 국가 기본공간정보 체계 개선 (안) 제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정책과)
지하도상가 정보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실험연구(II)	○○○	16. 2. 1. ~8. 31.	60,000	×	
LX 고객의 소리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	16. 2. 15. ~6. 14.	6,160	조사 불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경계점 관리 방안 연구	○○○	16. 4. 2 5. ~12. 25.	36,800	×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자연재해 피해 저감방안 연구	○○○	16. 4. 18. ~17. 2. 28.	50,000 (본사)	×	
융복합 ○○○○○○ 추진을 위한 사업대가 적용에 관한 연구	○○○	16. 4. 11. ~11. 30.	36,500	×	
3차원 기록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연구 (문화재 SCAN·BIM을 대상으로)	○○○	16 .4. 25. ~11. 24.	50,000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LX 담당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16. 9. 1. ~17. 2. 28.	40,000	×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도로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16. 10. 10. ~17. 3. 10.	30,000	○	UAV 활용 ○○○○ 모니터링 체계구축 확산사업(신규사업) 2017. 7~12. 15.2억)
빅데이터를 활용한 LX비즈니스 모델 연구(II)	○○○	15. 11. 1. ~16. 4. 30.	77,200	×	
급변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 구축 방안연구	○○○	16. 4. 1. ~17. 3. 31.	83,890	×	
토지가치 향상 지원 특별법(안) 연구	○○○	16. 7. 11. ~12. 23.	11,000	×	

일련번호	11 - 2	감사자	○○○○직 4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2개월

## 한국○○○○공사 상임감사

### 개선요구

제 목 학술지 저작권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지 「지적과 ○○○○」를 발행하고 있다.

「학술지발간규칙」제13조(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제1항에 “논문집에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만<sup>1)</sup>을 갖는다. 따라서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공사에서는 「지적과 ○○○○」 학술 논문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2016년부터 공사 홈페이지, 연구원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등에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과 ○○○○」 게재 논문에 대한 논문 인용지수를 향상시켜 공사에서 발행하는 「지적과 ○○○○」 학술지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과 ○○○○」를 발행하면서 편집저작권만 갖는 경우 제작 발행한

1) 편집저작권: 여러 개의 저작권을 선택·배열함으로써 창작성을 지니는 편집물에 대하여, 그것을 편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저작권. 단, 개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속한다.

1차 제작한 편집물에만 저작권을 갖게 되어 온라인에 게재하는 2차 저작물에 대하여는 불법 저작물을 게재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별첨] 학술지 저작권 이양동의서 징구 현황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과 ○○○○」에 게재된 학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상반기까지 게재된 논문에는 저작권 이용동의서를 받지 않아 온라인 게재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연구원에서는 저작권법 제45조2)(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제46조3)(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학술지발간규칙」을 개선하여 게재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사에 귀속하는 저작권 이양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학술지발간규칙」을 개정하여 저작권 이양 동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겠으며, 앞으로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해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지적과 ○○○○」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공사에 귀속하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징구 할 수 있도록 「학술지발간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2)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 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3)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별첨] 학술지 저작권 이양동의서 징구 현황(2014년 ~ 2016년)

년도	제목	저자	발간일	동의서 징구여부 (O, X)
2014년 상반기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한지적공사의 역할	○○○	'14.6.30.	X
	독일법상의 경계확정 소송	○○○	'14.6.30.	X
	중국 영토공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	'14.6.30.	X
	지적재조사사업에비타당성분석의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을 중심으로-	○○○	'14.6.30.	X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개선방안	○○○	'14.6.30.	X
	지하공간활용의권리보완을위한제도적개선에관한연구 -한계심도초과토지를 중심으로-	○○○	'14.6.30.	X
	공공데이터와오픈플랫폼의효율적자료연계를위한연계서버모형	○○○	'14.6.30.	X
	버퍼기반네트워크매칭을이용한도로데이터갱신기법연구	○○○	'14.6.30.	X
	범죄 공간정보 위치추적에 관한 연구	○○○	'14.6.30.	X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초급 활용 가이드 제작에 관한 연구	○○○	'14.6.30.	X
	오픈레이어 기반사용자 친화적 KML 검증도구 설계	○○○	'14.6.30.	X
	우리나라측량·공간정보관리에 관 한통합시스템 연구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모델의 도입-	○○○	'14.6.30.	X
	부동산 유형별 마케팅전략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14.6.30.	X
	커피전문점 권리금의 결정변수에 관한 연구	○○○	'14.6.30.	X
2014년 하반기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4.12.10.	X
	간도의 우리문화와 중국의 왜곡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	'14.12.10.	X
	지적분야중사자의자율성정도가조직성과에미치는영향 -리더십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	'14.12.10.	X
	환경변화에따른지적기관역할변화에대한고찰	○○○	'14.12.10.	X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방법 설계 적용에 관한 연구	○○○	'14.12.10.	X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탑재를 위한 한옥의 BIM 기반 3차원 모델링 연구	○○○	'14.12.10.	X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 평가	○○○	'14.12.10.	X
	공간정보 기반 산사태 발생지역 예측비율 평가	○○○	'14.12.10.	X
	공간정보 포털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14.12.10.	X
	3변수를 이용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연구	○○○	'14.12.10.	X
	수도권유출인구의공간적패턴분석및이동영향요인분석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과관련하여-	○○○	'14.12.10.	X
	적정의상가임대료결정에관한연구	○○○	'14.12.10.	X
	공기업의효율적재정운영관리방안연구	○○○	'14.12.10.	X
	PF대출분석기법을활용한부동산개발사업사업성평가개선연구	○○○	'14.12.10.	X
주택분양사업장의주택분양보증사고발생요인분석	○○○	'14.12.10.	X	

년도	제목	저자	발간일	동의서 징구여부 (O,x)
2015년 상반기	공간정보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	○○○	'15.6.30.	X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연구	○○○	'15.6.30.	X
	지목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15.6.30.	X
	지적분야 NCS 개선에 관한 연구	○○○	'15.6.30.	X
	통일 이후 북한주민 안정화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15.6.30.	X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분석	○○○	'15.6.30.	X
	Critical Reviews on Concept of Spatial Planning	○○○	'15.6.30.	X
	LX의 정보지도 서비스를 위한 주제선정 및 시범제작	○○○	'15.6.30.	X
	대규모 국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 방안	○○○	'15.6.30.	X
	등록전환 수치화 방안연구	○○○	'15.6.30.	X
	브이월드 데스크톱을 위한 대용량 공간정보 데이터 지원 방안연구	○○○	'15.6.30.	X
	지적재조사사업 주택밀집 지역 측량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15.6.30.	X
	3D 지적시스템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 설계	○○○	'15.6.30.	X
	무형자산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5.6.30.	X
	Assessing the Impact of Pedestrian Traffic volumes on locational Goodwill	○○○	'15.6.30.	X
	수도권 창업기업의 생멸에 대한 공간분포 패턴분석	○○○	'15.6.30.	X
2015년 하반기	국토조사체계개선방안연구	○○○	'15.12.10.	X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에 관한 연구	○○○	'15.12.10.	X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15.12.10.	X
	지적삼각(보조)점의 국가기준점번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15.12.10.	X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심지 토사유실 위험도 평가	○○○	'15.12.10.	X
	개방형 공공데이터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Geo-Data Appliance 구현 방안	○○○	'15.12.10.	X
	풍수해 보험관리지도를 위한 보험 목적물 GIS DB구축	○○○	'15.12.10.	X
	경계점좌표등록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사례 연구	○○○	'15.12.10.	X
	최소제곱법을 적용한 지적도근점측량 계산의 정확도 분석	○○○	'15.12.10.	X
	상수관로 탐사에 대한 지중레이더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15.12.10.	X
	MMAS 기법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탐색기법	○○○	'15.12.10.	X
	UAV 기반의 공간정보와 무한사면해석모형을 활용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	○○○	'15.12.10.	X
	예비 고령자의 경제적 은퇴계획에 따른 고령자 주택선택에 관한 연구	○○○	'15.12.10.	X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15.12.10.	X
	매매가격에 대한 기대상승률이 전세가격비율에 미치는 영향	○○○	'15.12.10.	X
	A Study on Determinants of Franchised Coffee Shop Rents	○○○	'15.12.10.	X



년도	제목	저자	발간일	동의서 징구여부 (O,x)
2016년 상반기	장비에 따른 3차원 공간정보 품질향상 요인추출 및 집단간 선호도에 관한 연구	○○○	'16.6.30.	X
	지상 LiDAR를 이용한 BIM 기반 건물의 3D 공간정보 구축 연구	○○○	'16.6.30.	X
	행정구역 자율통합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인식도 분석: 과산군과 증평군 사례를 중심으로	○○○	'16.6.30.	X
	모바일 GIS를 이용한 필지별 토사재해정보시스템 개발	○○○	'16.6.30.	X
	항공라이다 자료를 활용한 수목의 개체 수 및 수고 추출	○○○	'16.6.30.	X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하공간의 주요 이슈 고찰	○○○	'16.6.30.	X
	지적업무활용을통한국·공유지관리방안연구	○○○	'16.6.30.	X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장소 정보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16.6.30.	X
	개별 권리객체 기반의 3차원 지적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	'16.6.30.	X
	도심지역에서의 드론 운용을 위한 비행 고도별 SBAS 보강항법 가용 시간 예측	○○○	'16.6.30.	X

년도	제목	저자	발간일	동의서 징구여부 (O,x)
2016년 하반기	○○○○를 활용한 빈곤·취약지구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	○○○	'16.12.10.	○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시스템의 산림분야 활용	○○○	'16.12.10.	○
	거리척도와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지가 추정	○○○	'16.12.10.	○
	주거지내 상업화 발생영역에서 군집형성현상과 영향요인 연구 -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	○○○	'16.12.10.	○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16.12.10.	○
	지형지물을 이용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의 개선 방안	○○○	'16.12.10.	○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관리 만족도 연구 - 강남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	'16.12.10.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의 공간정보 웹 시각화 적용 기초	○○○	'16.12.10.	○
	고랭지 농업지역의 경지면적 산출을 위한 지상라이다 데이터와 지적성과의 실험적 비교 분석	○○○	'16.12.10.	○
	토지정보화 방법론의 개발에 관한 연구	○○○	'16.12.10.	○
	Comparison between the Road-based and the Parcel-based Address Coordinates for Urban Air Pollution Estimation	○○○	'16.12.10.	○
	Daum Map API를 이용한 위성영상의 기하보정 정확도 평가	○○○	'16.12.10.	○
	Landscape Changes: Assessing Pennsylvania State Park Viewsheds Across the Marcellus Shale Region	○○○	'16.12.10.	○
	공간정보와 통계정보의 융합 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	'16.12.10.	○
	체계적인 공간정보표준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	'16.12.10.	○
	초분광영상의 분광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토지피복분류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	'16.12.10.	○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참여형 공간설계방법론	○○○	'16.12.10.	○
	도시 지역 트윗 데이터의 시간대별 공간분포 특성 -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	○○○	'16.12.10.	○
	아파트 거래원인별 시·군 지역간 특성에 관한 연구 - 분양권 전매를 중심으로 -	○○○	'16.12.10.	○
	지적분야 과정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16.12.10.	○
지적확정측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12.10.	○	
창의적 공간설계를 위한 Geodesign Interface 연구	○○○	'16.12.10.	○	
토지·건물정보의 융복합 및 활용을 통한 통합정보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	'16.12.10.	○	

일련번호	11 - 3	감사자	○○○○직 4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연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에 대한 검토 및 연구목표 달성도, 기대효과(활용실적 등) 등을 심의·평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차기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현황(2015년~2017년 6월 현재)

연도	연구심의회 개최 횟수	연초 운영계획수립	연말 운영결과 검토	비고
2015년	8회	×	×	
2016년	14회	×	×	
2017년	6회	×		

그런데도 위 연구원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연구원에서 개최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초 운영계획 수립과 연말 운영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계획 수립 등의 절차 없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를 검토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원 ○○○○실에서는 ‘17년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후 ’17년의 운영결과를 검토하고 차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차기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 4	감사자	○○○○직 4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2개월

## 한국○○○○공사 상임감사

### 개선요구

제 목 연구개발 규정과 시행규칙의 내용중복 및 불일치 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한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정관」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연구개발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규정」 제6조(중장기연구개발계획 수립) 제2항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장기연구개발계획 수립) 제3항에 따르면 “○○○○○○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아래 [표 1] 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연구개발규정」 제6조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3조 내용

구분	「연구개발규정」 제6조 제2항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조항	<b>제6조 (중장기연구개발계획 수립)</b>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기술정책 및 공간정보 관련 기술개발 동향 2. 연구개발 추진목표 및 전략 3. 분야별 추진계획 4. 국내 연구역량 분석 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b>제3조(중장기연구개발계획 수립)</b>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목적과 목표, 내용 2. 연구의 추진전략 3. 연구의 추진계획 4.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방안 5. 연차별 투자계획 6. 연구의 기대효과 등

그런데 위 [표 1] 현황과 같이 「연구개발규정」 제6조(중장기연구개발계획 수립) 제2항에 중장기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이미 같은 규정에서(삭제) 정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또다시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을 같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규정·규칙에 중복된 사항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조 제3항에 정의된 내용은 중장기연구개발계획에 포함 되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별연구개발계획에서 과제별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표 2] 「연구개발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내용

구분	「연구개발규정」 제27조제1항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29조
조항	<b>제27조(연구활동작성)</b>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공청회, 설문조사, 기타 연구관련 활동결과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b>제29조 (연구관련 활동결과 작성)</b>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동안 수행한 연구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설문조사, 기타 연구관련 활동결과를 연심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표 3] 「연구개발규정」 제33조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45조 내용

구분	「연구개발규정」 제33조 제2항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
조항	<b>제33조(연구성과의 보완)</b> ②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보완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검토·보완하도록 지시하거나, 추가 연구과제로 선정·수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를 해당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제45조(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b> ⑤ 연구원장은 연구성과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검토·보완하도록 지시하거나 추가 연구과제로 선정·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를 해당 현업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표 2] [표 3] 현황과 같이 같은 규정 및 같은 규칙 내용 중 연구 활동작성, 연구관련 활동결과 작성, 연구성과의 보완, 연구결과의 반영 및 활용의 내용이 중복 되어 있어 규정의 일치가 필요하다.

[표 4] 「연구개발규정」 제23조 및 「연구개발 시행규칙」 제28조 내용

구분	「연구개발규정」 제23조제1항	「연구개발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조항	<b>제23조(연구의 진도관리)</b> ① 연구책임자(현업수행 연구과제 포함)는 연구과제의 추진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 월말을 기준으로 연구진도(월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마지막 월의 경우에는 연구완료보고서로 이를 대체한다.	<b>제28조 (연구진행보고)</b> ① (생략) ② 연구원장은 연구진행보고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1항의 연심회 개최일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월별로 별도 진행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심회가 생략될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표 4] 현황과 같이 같은 규정 제23조 제1항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추진사항 등의 진도보고를 다음달 5일까지 연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 제2항에서는 연구원장은 연구진행보고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연심회 개최일정에 맞추어 보고를 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규정과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연구개발 시행규칙」 제39조 및 「연구직관리규칙」 제20조 내용

구분	「연구개발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연구직관리규칙」 제20조 제4항
조항	<b>제39조(연심회별 평가비중)</b> ③ 연심회 평가결과 산정된 점수에 과제 유형별 <b>마일리지</b> 를 곱하여 <b>최종 마일리지</b> 를 해당 과제 <b>마일리지</b> 로 부여하여야 한다. <b>마일리지</b> 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직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라목을 준용한다.	<b>제20조 (평정의 종류)</b> ④ 종합평정은 업무성과평가와 직무역량평가가 점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연구직 직원은 업무성과평가와 직무역량평가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연구직이 부서장인 경우 직무역량평가만 반영할 수 있다. < 개정 2016.10.28 > 2. 직무역량평가는 연구직으로서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역량을 평가한다. 3. 업무성과평가는 연심회 평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개정 2016.10.28 > 4. <삭제 2016.10.28>

그리고 [표 5] 현황과 같이 「연구직관리규칙」이 개정<sup>4)</sup>되면서 폐지된 마일리지 제도가 아직까지 같은 규칙 제39조(연심회별 평가비중) 제3항에서 연심회 평가와 더불어 과제별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을 정의하고 있어 연구직 평정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위 공사에서는 같은 규정 및 같은 규칙에서 내용 중복과 불일치 되어있는 규정내용을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4) 「연구직관리규칙」 개정: 2016. 10. 28.

관리·활용하여 연구직 직원의 업무성과 평가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원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연구개발 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상호간 내용의 중복 및 불일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연구개발 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상호간 내용 중복 및 불일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 5	감사자	○○○○직 7급(갑)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2개월

## 한국○○○○공사 상임감사

### 개선요구

**제 목** 국가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 한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공사의 자체연구 과제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등으로부터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연구과제의 연구품질 유지를 위하여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 수는 최대 5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 하는 수탁연구과제는 최대 3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과제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에는 수탁연구과제의

동시수행한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바와 달리 수탁연구과제가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탁연구과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규정」 또는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에 동시수행 가능한 수탁과제의 한도 개수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연구개발 규정」 및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탁과제 수행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연구품질향상을 위하여 동시수행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한도개수와 관련된 조항을 「연구개발규정」 또는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등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 6	감사자	○○○○직 2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연구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통보(1개월) 주의요구(20일)

## 한국○○○○공사 상임감사

### 통보·주의요구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원 ○○○○연구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직원은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 및 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한국○○○○공사 e-감사시스템(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하여 해당 승인자(별표 제5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은 별표 제5호와 같다. 다만 비밀보장 및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의뢰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횡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속직원이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외부강의 관련 정보를 e-감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외부강의에 참가해야 한다.

[표] 2015년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

소속	직급	성 명	외부 강의일	외부강의 참가사유
○○○○연구실	연구직 3급	○○○	2015. 4. 2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적재조사 강의

※ ERP 외부강의 등록, 외출부 및 e-감사시스템 외부강의 등록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연구원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근태처리내역을 검토한 결과 외부 강의 관련 사항을 e-감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외부강의 신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외부강의에 참가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한국○○○○공사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원 ○○○○연구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지침)을 면밀히 숙지하는 등 외부강의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외부강의(회의) 신고 누락분 등록과 「한국○○○○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회의)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 연구직 3급 강○○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자]

○○○○○○원 ○○○○연구실 연구직 3급 ○○○

일련번호	11 - 7	감사자	○○○○직 2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외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통보(1개월) 주의요구(20일)

## 한국○○○○공사 상임감사

### 통보·주의요구

제 목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원 ○○○○실 외

내 용

○○○○○○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는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ERP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다.

「예산집행지침」 <별표 3>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 따르면 “출장자는 공무여행 전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사항을, 공무여행 후 14일 이내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의 변경사항을 ERP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 등록과 관련된 업무처리요령 알림<sup>5)</sup>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등록·사용내역 누락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등록하도록 재강조 지시 하였다.

따라서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여행 종료 후 14일

5) 국외출장 및 항공마일리지 업무처리요령 알림(○○○○○-2303: 2016. 3. 15.)

이내에 ERP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연구원에서는 별첨 [표] 현황과 같이 국내·외 공무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발생 후 14일 이내에 ERP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입력 및 등록을 누락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공적마일리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원 ○○○○연구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 ① 입력 및 신고 누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등록 및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부장은 입력 및 신고 누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조치하고,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입력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지역본부장은 입력 및 신고 누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조치하고,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입력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④ ○○○○역본부장은 입력 및 신고 누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조치하고,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입력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⑤ 한국○○○○공사 사장(○○○○○장)은 입력 및 신고 누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조치하고,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입력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원 ○○○○실 ○○○○직 5급 ○○

○○○○○○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원 ○○○○연구실 연구직 3급 ○○○

○○○○○○원 ○○○○연구실 책임연구원 ○○○

○○○○○○원 ○○○○연구실 선임연구원 ○○○

○○○○○○원 ○○○○연구실 선임연구원 ○○○

○○○○○○원 ○○○○연구실 연구위원 ○○○

○○○○○○원 ○○○○연구실 책임연구원 ○○○

○○○○○○원 ○○○○연구실 선임연구원 ○○○

○○○○○○원 ○○○○연구실 선임연구원 ○○○

○○○○○○원 ○○○○연구실 선임연구원 ○○○

○○○○○○원 ○○○○연구실 선임연구원 ○○

○○○○○○원 ○○○○연구실 책임연구원 ○○○

○○○○○○원 ○○○○연구실 책임연구원 ○○  
○○○○○○본부 지적사업처 ○○○○직 5급 ○○○  
○○○○지역본부 ○○지사 ○○○○직 4급 ○○○  
○○○○지역본부 ○○지사 ○○○○직 2급 ○○○  
본사 ○○○○○○실 ○○○○부 선임연구원 ○○○  
본사 ○○○○○○실 ○○○○부 ○○○○직 7급(을) ○○○  
본사 ○○○○○○실 ○○○○부 책임연구원 ○○○  
본사 ○○○○○○실 ○○○○부 ○○○○직 5급 ○○○



일련번호	11 - 8	감사자	○○○○직 3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86,27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연구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시정 1개월 주의요구 20일

## 한국○○○○공사 상임감사

### 시정(회수)·주의요구

제 목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보수(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원 ○○○○연구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가족친화경영 기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권장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위하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 사랑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알림(○○○○○-5924, 2014. 8. 4.)’에 따르면 “직원은 연 1회 개인별 ‘가족 사랑의 날’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태 관리는 출장목적을 ‘가족사랑의 날 행사 참석’으로 하고, 여비없는 일일출장(출장구분: 일반활동 / 근태구분: 기타)으로 조치하되, 개인별 사용현황에 대한 복무관리(근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가족 사랑의 날’ 2회 사용자 현황 (2016. 1. 1.~2017. 5. 31.)

기관명: ○○○○○○원

소속	대상자	가족사랑의 날 시행일자	근태처리 사항		비고
			오	정	
○○○○연구실	책임연구원	2016. 2. 29.	일반출장	기타	근태 정정 필요
	○○○	2016. 9. 13.	일반출장	연차	근태 정정 필요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총무관리 근태현황 재구성

그런데도 연구원의 2016. 1. 1.~2017. 5. 31.까지 직원 근태내역을 점검한 결과 정부권장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가족 사랑의 날’은 연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표 1] ‘가족 사랑의 날 2회 사용자 현황’과 같이 연 2회 중복하여 실시하는 등 개인별 근태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2] 2016년도 연차수당 착오 지급 현황 (2016. 12. 31.)

기관명: ○○○○○○원

(단위: 원)

대상자	통상임금	기지금액	요지금액	차액(회수)	비고(산출내역)
책임연구원 ○○○	4,866,250	372,530	186,260	186,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일자: 2013. 4. 1.</li> <li>• 연차일수: 15일</li> <li>• 사용일수: 13일→14일</li> <li>• 지급일수: 2일→1일</li> </ul>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급여관리 연차수당 지급내역서 재구성

※ 연차수당 산출방법: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

그와 관련하여 위 [표 2] 현황과 같이 「연차휴가에 관한 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차 사용일수 1일에 해당하는 186,27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원 ○○○○연구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근태사항 정정 및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 186,270원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 ①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근태처리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이용하여 수정하고, 과다 지급한 연차수당 186,27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원 ○○○○연구실 책임연구원 ○○○

일련번호	11 - 9	감사자	○○○○직 3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30,00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연구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시정 1개월 주의요구 20일

## 한국○○○○공사 상임감사

### 시정(회수)·주의요구

제 목 부양가족 상실신고 미준수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원 ○○○○연구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년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봉급지급일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

「급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와 지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별표 4 ‘제수당 지급 기준표’(38차 개정 2016. 5. 31.적용분)의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부모(여자의 경우 55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자녀 중 장애인을 말하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규정」 제6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5항에 따라 과도하게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와 사실과 다르게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되어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은 다음달 15일까지 그 지급받은 수당을 변상해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하게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1개월간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하며, 사실과 다르게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실과 다르게 지급받은 기간만큼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표] 2016년 가족수당 착오 지급 현황

기관명: ○○○○○○원 ○○○○연구실

(금액단위: 원)

직·성명	대상기간	부양가족 대상자	기지급액	요지급액	차액 (회수액)	비고(사유)
선임연구원 ○○○	2016. 9.~12. (4개월)	이**(부)	530,000	450,000	80,000	■ 자격상실(부 사망) - 상실일: 2016. 8. 23.
			150,000	0	150,000	1개월 지급 정지
계			680,000	450,000	230,000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급여관리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서 재구성

그런데도 연구원의 2016. 1. 1.~2016. 12. 31.까지 가족수당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위 [표] ‘2016년 가족수당 착오 지급 현황’과 같이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양가족 상실신고서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과도 지급받는 등 부양가족 신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원 ○○○○연구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양가족 상실신고 미준수에 따라 과도 지급된 가족수당 230,000원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 ① 과다 지급한 가족수당 230,000원은 즉시 회수 하시기 바라며, 「급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양가족(취득, 상실)신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에게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의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원 ○○○○연구실 선임연구원 ○○○

일련번호	11 - 10	감사자	○○○○직 3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65,00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제 목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납부 부적정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세법」 및 「회계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8. 1.자 과세기준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납부하고 있다.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2009년 본사 ○○팀의 ‘법인균등할 주민세 관련 질의회신’(○○팀-3088, 2009. 9. 16.)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운용세칙」 176-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sup>6)</sup>에 근거하여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6) 「지방세법운용세칙」 176-1(행정자치부 세정 13430-104, 2001. 2. 1.)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분류한다.”고 질의회신 받음.

기관으로 법인 표준세율 구분이 “그 밖의 법인(구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연구원은 지방세인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완주군 조례」에서 명시된 법인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그 밖의 법인”에 해당하는 주민세 50,000원 및 지방교육세 5,000원(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을 합산하여 납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 2016년 주민세(법인균등분) 납부 현황

기관명: ○○○○○○원

(단위: 원)

납부처	납부일자	기납부액	요납부액	차액 (회수액)	비고
○○군청	2016. 8. 10	220,000	55,000	165,000	지방교육세 포함

※ 지방교육세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0% 적용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회계관리 각개정원장 및 지출결의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연구원의 2016. 1. 1.~2016. 12. 31.까지 세금과공과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위 [표] ‘2016년 주민세(법인균등분) 납부 현황’과 같이 주민세(균등분) 부과내역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고지금액을 납부하는 등 세무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원에서는 2016년도 주민세(법인균등분) 165,000원을 과다 납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원 ○○○○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과다 납부한 주민세(균등분)에 대하여는 즉시 환급 신청을 통해 수입처리 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장은 과다 납부한 지방세(주민세 균등분) 165,000원은 즉시 과세기관에 환급 신청하여 각각 세금과공과(원금) 및 잡수입(이자 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수입처리 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 11	감사자	○○○○직 7급(갑)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원 ○○○○실	처분요구일자	2017. 7.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 추가 등록

관 계 기 관 ○○○○○○○원 ○○○○실

내 용

한국○○○○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흥 및 사행업종 등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5조 제1항은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클린카드에 의하여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을 아래 [표1] 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1]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현황

- 일반유흥주점 :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카테일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PC방,

골프용품점, 헬스클럽,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따라서, ○○○○○○원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 [표1] 의 업종이 사용제한 업종으로 등록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예산 집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의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각테일바(업종코드: 8010), 주점(업종코드: 8013), 레저업소-회원제형태(업종코드: 9301)가 사용제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표2]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 집행한 예산 현황(2015. 1. 1. ~ 2017. 6. 23.)

일자	거래처	업종	사용금액	비고
2016 .6 .28	꼬끼오통달	주점	162,000	

그 결과 위 [표2] 와 같이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정하고 있는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실에서는 각테일바(업종코드: 8010), 주점(업종코드: 8013), 레저업소-회원제형태(업종코드: 9301)를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등록하고 법인카드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은 각테일바(업종코드: 8010), 주점(업종코드: 8013), 레저업소-회원제형태(업종코드: 9301)를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추가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